

감정평가서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최상욱
건명	곽은희 소유물건(2025타경31240)
감정서번호	경북22505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북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박 권 순

감정평가액	삼천칠백칠십오만일천삼백원정 (₩37,751,3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최상욱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4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곽은희 (2025타경31240)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5.13	2025.05.13	2025. 05. 19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689 × 181	토지	63.3	-	37,751,300
	토지	100 × 4	하	여	백	
합계					₩37,751,3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1.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건임.

2. 대상 토지의 개요 (전체토지 기준)

(2025.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지가 (원/㎡)
1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839-51	163	도로	도로	1종 일주	소로 한면	사다리 평지	-
2	동소 839-39	100	도로	도로	1종 일주	세로 (가)	부정형 평지	-
3	동소 839-31	526	도로	도로	1종 일주	소로 각지	부정형 평지	-

3. 기준가치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본건의 경우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4. 기준시점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 05. 13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5. 실지조사 일자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은 2025. 05. 13 일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6. 기타사항

본건 기호1)~3)은 다수인의 공유지분 토지로서 평가대상 지분의 위치확인이 불가하여 전체토지에 대한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지분비율에 의거 평가금액을 산정하였음.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적용 규정

가. 본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을, 제12조에서는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조정을 규정하고 있음.

다. 본건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등을 적용함.

2. 대상물건에 적용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 평가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하여,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산출과정을 거쳐 토지의 적정가격을 감정평가하였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비교 검토하는 절차는 생략하였음.

III. 토지의 감정평가

1. 비교표준지의 선정

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2025. 01. 01 기준)

기호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원/㎡)
A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836-16	171	대	단독주택	1종일주	세로(가)	사다리평지	653,4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나. 비교표준지 선정 및 그 사유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되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상기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2. 시점수정

가. 지가변동률(서구 주거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5. 01. 01 ~ 2025. 03. 31	0.154	3월까지 누계변동율
2025. 03. 01 ~ 2025. 03. 31	0.061	3월 변동율
2025. 01. 01 ~ 2025. 05. 13	0.239 (1.00239)	$1.00154 \times (1 + 0.00061 \times 43/31)$ = 1.00239

※ 2025년 03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기준시점 현재 미고시된 상태로서 2025년 03월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나. 시점수정치 결정

시점수정을 위하여 생산자물가상승율도 고려 대상이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물가변동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본건 토지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상기 지가변동율을 시점수정치로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시점수정치	1.00239
-------	---------

3.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비교치: 1.000)

4. 개별요인 비교

본건 평가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요인 비교치는 각 조건별로 세분하여 비교한 후 격차율을 산정하였음.

가.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상업지대	주택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접근도로의 상태, 농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상태, 임도의 상태
접근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의 편의성	교통시설, 상가,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도심 및 시장 접근성, 물류시설과의 접근성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 및 교통시설 접근성, 입목반출 용이성 등
환경조건 (자연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자연환경	일조,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재해의 위험성	일조, 통풍, 토양, 토질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 이용상황, 토양오염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 이용상황, 토양오염 등	면적, 형상, 고저, 접면도로, 이용상황, 토양오염 등	면적, 형상, 경사, 경작의 장애, 이용상황, 토양오염 등	규모, 형상, 고저, 표고, 이용상황, 임상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행정상의 규제정도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행정상의 규제정도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나. 격차율 산정(주택지대)

토지 기호	표준지 기호	비 교 항 목						격차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	A	1.15	1.00	1.00	1.00	0.33	1.00	0.380
2	A	1.00	1.00	1.00	1.00	0.33	1.00	0.330
3	A	1.15	1.00	1.00	1.05	0.33	1.00	0.398

- 본건 기호1) 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접면도로의 폭은 유리하고 지목(도로) 및 이용 상황이 불리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 열세임.
- 본건 기호2) 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지목(도로) 및 이용상황이 불리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 열세임.
- 본건 기호3) 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접면도로의 폭 및 접면도로 상태(본건:2면획지)는 유리하고 지목(도로) 및 이용상황이 불리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 열세임.

5.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5.14. 선고 고), 2002두 5054(2003.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의 감정평가선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나. 인근 지역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평가/거래 시점	비고
a	서구 비산동 839-26	전	173	1종일주	1,800,000 (평균단가)	2024. 04. 29	평가사례
b	동소 854-1	장	555	1종일주	1,800,000	2024. 04. 03	평가사례
c	동소 854-11	장	640	1종일주	1,920,000	2024. 03. 18	평가사례
d	동소 859-6	장	458	1종일주	1,830,000	2022. 05. 03	평가사례
e	동소 839-26	전	173	1종일주	1,763,005	2024. 05. 13	거래사례
f	동소 839-29	대	171	1종일주	1,578,947 (건물포함)	2023. 07. 25	거래사례
		건물	164.32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1) 선례(사례)의 선정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상기 사례 중 기호 b)를 선정하여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2) 산출산식

$$\begin{aligned}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선례(사례) 기준 표준지의 가격}}{\text{표준지공시지가 기준시점 가격}} \\ &= \frac{\text{선례(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end{aligned}$$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기호	구분	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가격 (원/㎡)	보정치산정 [선례(사례)기준 /공시지가기준]
1	사례 (기호 b)	1,800,000	1.00773	1.00	0.893	1,619,825	2.473
	비교표준지 (기호 A)	653,400	1.00239	-	-	654,961	

※ 시점수정치(서구 주거지역, 2024. 04. 03 ~ 2025. 05. 13) : 1.00773

※ 지역요인비교 : 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 개별요인비교 (사례 대비 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0.85	1.00	1.00	1.05	1.00	1.00	0.893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접면도로의 폭은 불리하고 형상이 유리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 열세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본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상기에서 산정된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 및 평가선례, 거래사례 및 인근지역 부동산 경기상황 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2.47)

6. 토지단가의 산정 및 결정

기호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653,400	1.00239	1.00	0.380	2.47	614,746	615,000
2	A	653,400	1.00239	1.00	0.330	2.47	533,859	534,000
3	A	653,400	1.00239	1.00	0.398	2.47	643,866	644,000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평가전례와 거래사례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며 상세한 물건별 평가금액은 토지감정평가명세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839-51	도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163 × 1/18	9.1	615,000	5,596,500	곽은희 지분
2	동소	839-39	도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 × 1/4	25.0	534,000	13,350,000	곽은희 지분
3	동소	839-31	도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526 × 1/18	29.2	644,000	18,804,800	곽은희 지분
합 계								₩37,751,3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소재 "대구서부소방서"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변은 주택, 소규모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반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3) 토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도로용지로서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토지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2),3) 토지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형의 토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토지 : 남서측 노폭 약 10M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2) 토지 : 북동측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3) 토지 : 남서측 노폭 약 10M 및 북동측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 토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대구서부중학교)
- 기호3) 토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공용지(이현공공공지)(저축), 사회복지시설(비원 노인복지관)(저축), 소로1류(폭 10M~12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서)국지도로)(저축),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대구서부중학교)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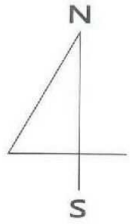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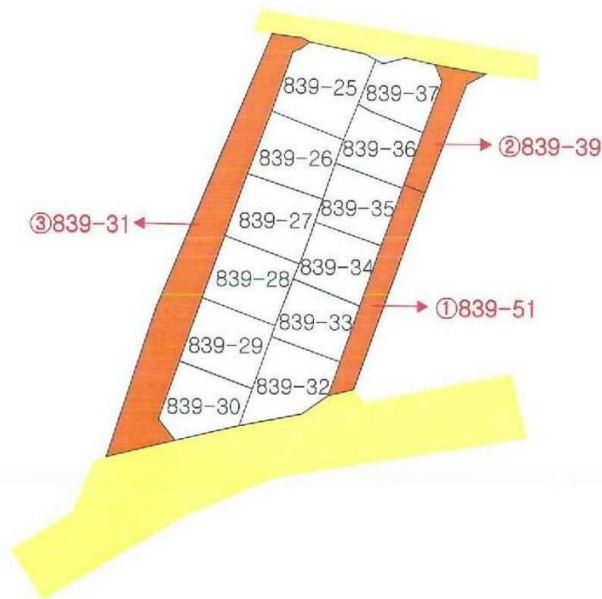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839-51외



지 적 도



S:1/1,200



사 진 용 지



기호1) 토지



기호1) 토지

사 진 용 지



기호2) 토지



기호2) 토지

사 진 용 지



기호3) 토지



기호3) 토지